

학생 언론활동 지원 규칙

제정 2011. 07. 19

개정 2013. 03. 0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인터넷, 뉴스레터, 신문,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학생활동, 학술, 공지 사항 등 학우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며,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대내외 홍보활동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재학생이 자유롭게 언론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학보사 및 방송국을 설치, 운영시에는 제3조 부터 적용하여 운영 한다.

제 2 장 조직 및 직무

제3조(임원) 본 학보사는 국장(교원) 및 학생 국장을 둔다.

1. 국장은 학생서비스센터장으로 하고, 학생국장은 학생임원 중 교학처장이 위촉한다.
2. 국장은 학보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학생 국원을 지도·감독 한다.

제4조(학생임원 및 국원) 학생임원 및 국원은 다음과 같다.

1. 실무국장
2. 총무부장
3. 정국원
4. 수습국원

제5조(학생임원 및 국원의 자격, 임기, 임명) 학생임원 및 국원의 자격, 임기, 임명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실무국장, 부장, 정국원 및 수습국원의 자격은 우리대학 재학생으로서 평균 B 학점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.

제3편 행정(제2장 학생행정)

2. 실무국장, 부장, 정국원 및 수습국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보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3. 학생임원과 정국원의 임명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- ① 실무국장은 학생 추천을 받아 국장이 임명하며, 방송국 운영 전반업무를 담당하고 국장의 지도하에 전체 국원을 대표한다.
 - ② 총무부장은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국장이 임명하며, 학보사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.
 - ③ 국원 및 수습국원은 우리대학 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국장이 임명한다. 단, 수습국원은 1학년 중에서 선발한다.

제6조(운영회의 및 평가회의)

1. 운영회의는 매월 1회씩 실시하며, 학보사 전반에 대해 논의 한다.
2. 평가회의는 매주 금요일 실시한다.

제 3 장 학보사 및 방송

제7조(프 로) 실무국장은 매학기 학보사 및 방송 프로그램을 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8조(원 고) 학보사 발행 및 방송 원고는 사전에 작성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9조(윤 리) 학보사는 공익성과 교육성에 유의하여야 하며, 방송표현은 대학의 품위를 유지하며, 방송윤리를 지켜야 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0조(재 정) 본 학보사의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.

제11조(회비징수) 본 학보사의 경비는 매학기 학생회비에서 책정한다.

제12조(회 계) 본 방송국의 경비지출은 본 대학 회계규정에 준용하여 집행한다.

제13조(예산 및 결산)

1. 예산은 매학기 초 국장이 편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2. 결산은 매학기 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14조(장학금) 실무국장 및 부장은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15조(기자재관리 및 반출) 국원은 기자재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, 관리, 보전해야 하며, 국장의 승인 없이 임의 반출, 사용, 부속품 교체, 교환 등을 할 수 없다. 또한 본 학보사의 시설 및 기자재를 반출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(변상책임) 방송기자재 사용자가 기자재 및 기구를 부주로 인하여 파손이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